'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E4블록)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7.13(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7.07.03)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 공급대상 지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5-286호)]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017.04.13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우선공급하며,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지역 :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관광특구 6.2㎢제외),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 동일순위 청약자(특별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는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부산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청약자가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 청약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 함)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함(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 불가 함(2순위로 청약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모든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민간택지, 기장군 - 민간,공공택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2015.02.27)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계약금을 모두 완납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의 재당첨 제한 기준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 (www.samhoapt21.co.kr) 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35340호(2017.07.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대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3-15번지 일원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E4블록)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22층 아파트 4개동 3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11,720.0000㎡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공용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이전 기관				
민영주택	3단지	2017000873-01	84.9275A	84.9275	24.6121	109.5396	4.1878	43.4868	157.2142	32.1597	7	7	7	2	7	48	78	4	2020년 01월
		2017000873-02	84.9776B	84.9776	23.7442	108.7218	4.1903	43.5125	156.4246	32.1786	7	7	7	2	7	48	78	4	
		2017000873-03	91.9754A	91.9754	24.1788	116.1542	4.5353	47.0957	167.7852	34.8285	0	7	0	2	7	62	78	4	
		2017000873-04	114.9800A	114.9800	31.2042	146.1842	5.6698	58.8751	210.7291	43.5397	0	7	0	2	7	62	78	4	
		2017000873-05	159.9487P	159.9487	45.2012	205.1499	7.8872	81.9012	294.9383	60.5681	0	0	0	0	0	2	2		
		2017000873-06	160.9884P	160.9884	48.4784	209.4668	7.9385	82.4336	299.8389	60.9618	0	0	0	0	0	2	2		
		계									14	28	14	8	28	224	316	16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등 공용면적 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 됨

공급금액 (3단지) (단위 : ㎡ / 원 / 85㎡ 초과 주택형은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해당동	일반분양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차 17.09.07	1회차 18.02.15	2회차 18.07.13	3회차 18.10.15	4회차 19.02.15	5회차 19.06.14	6회차 19.09.13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일)
84.9275A	301동 1호 302동 4호	42	2	2층	201,570,667	190,029,333	391,600,000	10,000,000	2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117,480,000
			2	3층	201,570,667	203,029,333	404,600,000	10,000,000	30,460,000	40,460,000	40,460,000	40,460,000	40,460,000	40,460,000	40,460,000	121,380,000
			2	4층	201,570,667	207,429,333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2	5층	201,570,667	216,129,333	417,700,000	10,000,000	3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125,310,000
			10	6~10층	201,570,667	224,829,333	426,400,000	10,000,000	3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42,640,000	127,920,000
			10	11~15층	201,570,667	233,529,333	435,100,000	10,000,000	3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130,530,000
			10	16~20층	201,570,667	242,229,333	443,800,000	10,000,000	3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133,140,000
			4	21층이상	201,570,667	255,329,333	456,900,000	10,000,000	3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137,070,000
	303동 4호 304동 1호	36	2	2층	201,570,667	234,029,333	435,600,000	10,000,000	3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130,680,000
			2	3층	201,570,667	248,529,333	450,100,000	10,000,000	3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135,030,000
			2	4층	201,570,667	253,429,333	455,000,000	10,000,000	3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2	5층	201,570,667	263,029,333	464,600,000	10,000,000	3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46,460,000	139,380,000
			10	6~10층	201,570,667	272,729,333	474,300,000	10,000,000	3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10	11~15층	201,570,667	282,429,333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8	16~19층	201,570,667	292,129,333	493,700,000	10,000,000	3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49,370,000	148,110,000
84.9776B	301동 4호 302동 1호	42	2	2층	201,689,129	187,010,871	388,700,000	10,000,000	2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38,870,000	116,610,000
			2	3층	201,689,129	200,010,871	401,700,000	10,000,000	3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120,510,000
			2	4층	201,689,129	204,310,871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2	5층	201,689,129	212,910,871	414,600,000	10,000,000	3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41,460,000	124,380,000
			10	6~10층	201,689,129	221,610,871	423,300,000	10,000,000	3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42,330,000	126,990,000
			10	11~15층	201,689,129	230,210,871	431,900,000	10,000,000	3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129,570,000
			10	16~20층	201,689,129	238,810,871	440,500,000	10,000,000	34,050,000	44,050,000	44,050,000	44,050,000	44,050,000	44,050,000	44,050,000	132,150,000
			4	21층이상	201,689,129	251,810,871	453,500,000	10,000,000	3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136,050,000
			2	2층	201,689,129	230,710,871	432,400,000	10,000,000	3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129,720,0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 총 14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 공급량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1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기준
※ 전년도(201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고시)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596,59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16,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15,914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임.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됨
-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무직자 사실증명원,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세무서,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공급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	10	11	12	13 **입주자 모집공고**	14 **견본주택 오픈**	15
16	17	18 **특별공급 접수** 이전기관 접수 : 09:00~17:30 (주택협회 홈페이지 신청) 기타특별공급 접수 :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신청)	19 **특별공급 접수 및 발표** 이전기관 접수 : 09:00~16:00 (주택협회 홈페이지 신청) 이전기관 발표 : 19:00 (주택협회 홈페이지 신청) 기타특별공급 발표 : 16:00 (견본주택 발표)	20 **1순위(당해지역)** kbstar(국민은행) apt2you(기타은행)	21 **1순위(기타지역)** kbstar(국민은행) apt2you(기타은행)	22
23	24 **2순위** kbstar(국민은행) apt2you(기타은행)	25	26	27	28	29
30	31 **당첨자 발표(3단지)**	8.1	2	3	4	5
6	7 **계약**	8 **계약**	9 **계약**	10	11	12

07.14(금) 모델하우스 오픈

특별공급 접수 **2017.07.18(화)** 1순위 청약(당해) **2017.07.20(목)** 1순위 청약(기타) **2017.07.21(금)** 2순위 청약 **2017.07.24(월)**

신탁사 : ㈜생보부동산신탁 **위탁사** : 케이엠베스트솔루션 주식회사 **시공사** : 주식회사 삼호
www.samhoapt21.co.kr 051)752-1101